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31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제221403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 (안 제7조제3항제1호 단서)	3
나. 부칙	20

I.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제221403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7.

다. 회 부 일 : 2025. 11.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첨단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임.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는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으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인바, 개발부담금의 경우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술집적, 인재 확보와 클러스터를 통한 집중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선제적·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와 세제혜택 등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항 단서).

3. 검토의견

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 (안 제7조제3항제1호 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u>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u> 2. ~ 4. (생략)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 <u>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1) 개발부담금 제도 개요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된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이익’¹⁾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따라 정상지가

(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고,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법 제5조²⁾에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개발이익의 20% 또는 25%가 부과³⁾되고 있으며,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에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데,

현행법은 제7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거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1항4)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⁵⁾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사업”이라 함)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3) <개발부담금 개요>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참고’ 참조

구분	내용
목적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부과기준	◦ 개발이익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개별입지사업 25% 또는 계획입지사업 20%)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등
대상사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등 * 대상면적 : (도시) 특별·광역·세종 660㎡, 그 외 지역 990㎡, (비도시) 1,650㎡ 이상
부과제외 및 감면사업	◦ (부과제외) 국가 시행사업, 지자체 공공 목적 시행사업 ◦ (면제) 비수도권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등 ◦ (50%감면) 공공기관 시행사업, 중소기업 시행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 자료: 국토교통부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같은 조 제2항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같은 항 각 호에 명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되며,

같은 조 제3항7)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8)(이하 “산업단지개발사업”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결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

이라 함) 등 같은 항 각 호에 명시된 개발사업(이하 “개발부담금 면제 사업”이라 함)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표 1〉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사업

구분	사업시행자	대상사업
부과 제외 사업	국가	모든 사업
	지방자치단체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100% 면제	모든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 제외) ◦ 관광단지조성사업(수도권 제외) ◦ 물류단지개발사업(수도권 제외)
	창업기업	◦ 공장용지 조성사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0% 경감	지방자치단체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사업 이외의 사업
	사업시행자 ^{주)}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국가철도공단	◦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한국교통안전 공단	◦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사업
	한국철도공사	◦ 역시설 및 역세권개발사업
	중소기업	◦ 공장용지 조성사업(수도권 제외)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수도권 제외) ◦ 관광단지조성사업(수도권 제외)
	모든 사업시행자	◦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제5호 나목)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자료: 국토교통부

(2)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제3항제1호 본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⁹⁾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의 범위를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라 함)로 지정된 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인 경우”로 변경하여,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인 경우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9)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률 제5285호 개정(1997.1.13. 개정·시행)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공단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도권으로의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¹⁰⁾의 법률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1호¹¹⁾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같은 법 제11조¹²⁾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¹³⁾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전략기술을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14)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¹⁵⁾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2026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및 방산 등 6개 산업 분야에서 19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4개 산업 분야에서 12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용인·평택, 인천·시흥 등 2개 단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

-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표 2〉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구분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비고
반도체	8개	2개소(용인·평택 / 구미)	
디스플레이	4개	1개소(천안·아산)	
이차전지	3개	4개소(청주 / 포항 / 새만금 / 울산)	신규 특화단지 지정절차 진행 중
바이오	2개	5개소(대전 / 화순 / 인천·시흥 / 춘천·홍천 / 안동·포항)	
로봇	1개	-	신규 특화단지 지정절차 진행 중
방산	1개	-	
합 계	19개	12개소	

※ 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K-배터리로 미래 산업 성장에너지 충전한다' 보도자료, 2025. 11. 28.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 및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기술 경쟁력을 증진하고자, 혁신생태계의 기반이 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육성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특화단지 육성에 관한 정부 시책의 추진, 특화단지 구성에 대한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특화단지 구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¹⁶⁾하고 있으며,

1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같은 법 제22조17)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 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2조 및 그 하위 법령 등은 개발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경감 비율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이에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를 「개발이익환수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은 시행지역 또는 사업시행자의 유형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표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개편 방안

구 분		현 행			개정안
시행 지역	사업 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외	모든 사업시행자
	수도권	부과 제외	50% 경감	전액 부과	<u>면제</u>
	수도권 외	부과 제외	면제	면제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연관 산업·연구기관과의 집적 효과 및 전문인력 접근성이 중요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에 조성할 필요가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에 조성하는 경

우 해당 국가첨단전략산업이 국가안보·경제성장 등에 기여함으로써 그 개발이익을 국가 전체가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소재 산업 단지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7조제3항제2호¹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집적시설¹⁹⁾과 산업기술단지²⁰⁾의 경우 각각 개별 근거법령에

1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라.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마.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수 있겠음.

다만, 개정안이 산업과 기반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과 아울러, 국가의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4년 시행 개발사업²¹⁾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려는 취지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제2204207호)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²²⁾, 정부는 유사한 취지

바. 신기술의 보호·육성 및 창업

사.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아. 시험생산

자.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차.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을 의미함.

22) 해당 법률안은 2024년 9월 24일 발의되어 동년 9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에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의 적용 범위를 2024년~2026년 시행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표 4〉 정부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방안

구분	내용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 2024년 시행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 (수도권 50%, 수도권 외 100%)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19.)	◦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수도권 50%, 수도권 외 100%)을 2025년 신규 개발사업까지 확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25. 8. 14.)	◦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을 2025년 및 20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

※ 자료: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방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경감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방안을 통해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수도권 개발압력 가중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의 필요성과 아울러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²³⁾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23)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법」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개발부담금 50%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표 5〉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국토교통부 수정의견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u><신 설></u>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u>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u>	③ (현행과 같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u>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u>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국토교통부 수정의견
	<u>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u> <u>지로 지정된 산업단</u> <u>지 외의 산업단지인</u> <u>경우는 제외한다.</u>	
2. ~ 4. (생략) ④ • ⑤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재정경제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수도권 소재 산업 단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및 지방 발전 측면에서 과밀화된 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방 이전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표 6〉 개정안에 대한 일부 기관의 의견

제출기관	제출의견
재정 경제부	- 수도권 내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는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음 *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시행 중
전라북도 임실군	- 국가 및 지방 발전 차원에서 과밀화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이전하여 우수 인재 및 교통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먼 미래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각종 화학물질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최적의 장소를 신중히 선정 필요

나.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효과가 조기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개정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률 제9조제3항·제4항²⁴⁾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면제가 적용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준 시점)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의 감면 규정이 개정된 경우의 적용례는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²⁵⁾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사례²⁶⁾가 다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안 제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대한 의견과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면제 대상 사업에서 경감 대상 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존 개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적용례를 고려하여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2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9045호, 2008. 3. 28.>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467호, 2015. 8. 11.>

제2조(개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669호, 2015. 12. 29.>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참고

개발부담금 제도 개요

□ 목적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 주요내용

- (대상사업)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지역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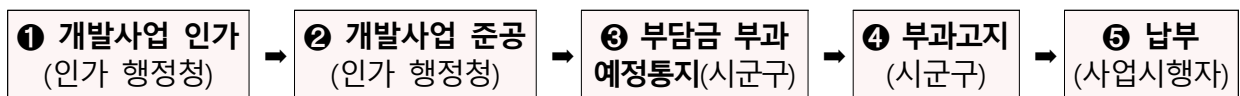
* 대상면적 : (도시) 특별·광역시·세종 660㎡, 그 외 지역 990㎡, (비도시) 1,650㎡ 이상

- (부과기준)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계획입지 20% 또는 개별입지 25%)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등

- (징수권자/납부의무자) 시·군·구 / 사업시행자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사업

- (부과제외) 국가 시행 개발사업, 지자체 시행 공공목적사업
- (50%감면) 공공기관 시행사업, 중소기업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 (면제) 비수도권 내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 등

□ 부과·징수현황(국가+지자체 귀속분 합산, 단위: 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부과액	4,578	4,307	5,643	5,849	8,768	6,008	5,044
징수액	3,233	2,978	4,283	4,464	5,727	4,546	4,955